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023. 5.



전라남도
JeollaNamdo
(감 사 관 실)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조직·인사 운영 등을 종합적·체계적 감사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23. 2. 6.부터 2. 10.까지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결과

대상 기관	총계 (가:다)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모범 사례 (다)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E)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기관 경고 (E)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의 시정 (b)					
							소계 (a)	회수	추징	감액	기타						
정보 문화산업 진흥원	20	3 (5)	1 (1)	2 (4)	16	2 (522)	2 (522)	1 (4)			1 (518)		7	2	4	1	1

Ⅲ. 주요 처분요구

①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3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관리 및 직원채용·해임·파면·징계 등을 심의·의결함
- 「진흥원 인사규정」 제30조 등에 진흥원은 인사관리 및 상벌,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도록 규정
- 한편 「광주전남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 제30조 등에 인사위원회는 도 기획조정실장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규정
- 또한 「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7조 등에 인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도록 규정
-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9조 등에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되고, 시·군은 부시장·부군수가 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3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장이 '직원채용(3건) 및 징계(1건)'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후 원장(위원장 겸임)이 심의·의결하여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원장을 제외하는 규정 개정 등을 미 검토

☞ 앞으로 전남도의 다른 출연기관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참고하여 원장을 제외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국내여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공무상 출장 시 임직원 91명에게 운임 등 국내여비 2억 5,709만원을 지급함
- 「진흥원 여비규정」 제8조 등에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운임은 철도, 버스요금 등 정액으로 지급하되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소 신용카드영수증, 주차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제출 시에만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 등 73명이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출장지 식당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821만원의 국내여비(운임)를 부적정 지급

☞ 앞으로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통행영수증, 주유소 신용카드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교육하고, 국내여비를 지급할 시에는 통행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명백히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주의요구”

③ 입주기업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일자리추진실 등 3개 부서)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예비창업자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보육시설 내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관리·운영 중

1.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정비 부적정

-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14조에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할 경우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고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의 최초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 한편 「전남○○○파크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운영규칙」 제9조 등에 입주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고 입주기간은 최대 8년 이내로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일자리추진실)은 최대 입주기간을 명시한 규정이 없어 '23. 2. 10. 현재 38개 입주기업 중 ○○○연구소는 18년간을 입주하고 있는 등 17개 기업이 10년 이상을 입주하고 있는데도 규칙 개정을 미검토

2. 퇴거대상 입주기업 조치 부적정

-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21조 등에 입주기업의 퇴거사유 발생시 퇴거 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입주계약서」 제15조 등에 임차인이 소유물 반출 및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목적물 원상회복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일자리추진실 등 2개 부서)은 '21년 6월부터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퇴거대상 ○○○○○○○(주) 등 2개 입주기업에게 목적물 원상회복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채 퇴거요청 공문 등을 송부

3. 입주기업 연장신청 및 연장결정 업무 부적정

-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14조 등에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입주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진흥원에 신청하고, 원장은 입주기간 연장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등 3개 부서)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74건을 입주 연장하면서 70건은 신청기한(입주계약 만료일 60일 전)을 최소 4일, 최대 95일을 초과신청받았고, 2건은 신청없이 연장하는 등 72건을 부적정 처리
 - 또한 연장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15건에 대하여 최소 32일, 최대 71일을 초과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 처리

- ☞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14조에 입주기업의 최대 연장기간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입주기업은 자립경영 기반 구축 후 일정기간 동안 입주를 종료하고 예비창업자 등이 신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 ☞ 퇴거 대상 입주기업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통보”**
- ☞ 앞으로 관련 규칙에 따라 입주기업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일자리추진실)은 '19년부터 '21년까지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활동가육성사업에 113억원을 지원·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지자체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기한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또한 진흥원 「사업운영 협약서」 제11조 등에 진흥원은 사업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일자리추진실)은 '19년과 '20년 '전남○○○○○○○활동가육성사업'이 '21. 12. 31.에 종료되었는데도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정산보고를 미조치
 - 또한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잔액(5억 1,639만원) 및 이자액(155만원)을 미반납하는 등 반납업무 처리 부적정

< 전남○○○○○○○활동가육성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액			
		합계	도비	시군비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11,335,200	516,396	258,344	258,052	1,559	353	603	603
2019전남○○○○○○○ ○○○활동가육성	6,460,000	293,267	146,634	146,633	1,409	295	557	557
2020전남○○○○○○○ ○○○활동가육성	4,875,200	223,129	111,710	111.419	150	58	46	46

- ☞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장 2명, 前 ○장 1명 "훈계요구"
- ☞ 관련 규정에 따라 도(○○○정책과), 시·군(○○시 등 20개 시·군)에 보조금을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5억 1,795만원을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5 고정자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토지, 건물, 비품 등의 자산을 「고정자산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고정자산 관리규칙」 제8조에 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 취득시마다 각 취급책임자와 협조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관리하고 각 취급책임자는 고정자산 취득시마다 고정자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규칙 제5조 등에 관리책임자가 자산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불용자산의 처리 및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 할 때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진흥원(경영지원실)은 '19. 4. 9. 前 ○○관사 내 가구 등 10종 (431만원)을 취득하고도 고정자산대장·기록부에 미기재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
 - 또한 원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22. 3. 24. 폐기처분(침대 1종, 77만원), '22. 3. 26.(식탁 등 9종, 354만원) 기증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앞으로 고정자산은 취득 시마다 고정자산기록부에 기재하고, 불용자산 처리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⑥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업무 추진 부적정

- 위 진흥원(ICT융합본부 등 3개 부서)은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 등 검사조서 작성 대상인 3천만원 이상의 공사 16건을 추진

1.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징수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ICT융합본부)은 '21. 12. 24.에 ○○○○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를 완료 건에 대하여 계약대금(3,2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하자보수보증금 64만원을 받지 않은 채 계약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

2.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 등 3개 부서)은 '20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13개소는 하자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3개소는 5회만 실시하여 3회 미실시하였으며,
 - 또한 16개소 중 10개소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처리 소홀
 - 특히 '20년 4월 ○○군과 협약·시행한 '○○을 새기는 안전한 ○○거리 ○○공사'를 '21. 5. 10. 완료하고도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시설물 인계·인수를 미실시 했다는 사유로 ○○군과 진흥원 모두 하자검사를 미실시

- ☞ '20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로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업무 담당자 **"훈계요구"**
- ☞ 앞으로 준공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받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 ○○군은 '○○을 새기는 안전한 ○○거리 ○○공사' 시설물을 인수하여 하자검사 등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7 건설공사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ICT융합본부)은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21년 지역○○○○○○○ 확산사업 복합교육공간 편의시설 구축공사*'를 추진
 - * (사업비) 10,397만원 (사업량) 엘리베이터 1기 설치
-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준공신고서를 통지받으면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14일 이내 검사를 하고,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ICT융합본부)은 '21. 12. 24. 준공검사를 하면서 시스템비계 일부 미설치, 콘크리트 펌프차 미사용 등 미시공분 398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하여 업무처리 부적정
 - * 시스템비계 172만원, 콘크리트 펌프차 150만원, 제경비 76만원

☞ 미시공 금액 398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⑧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감사실)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예방지침」을 준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

1.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 및 소극행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하도록 규정
- 또한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예방지침」 제9조 제2항에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조사 완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감사실)은 '22. 3월경(정확한 날짜 모름)에 성희롱 고충신고서 2건이 ○○조합에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가 '22. 11. 10. 에서야 조사 착수 및 '22. 12. 8. 조사 완료하는 등 **부당 지연 처리**
- 그로 인하여 규정을 위반한 채 성희롱사건 조사 지연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2차 피해 발생 우려 초래

2. 비밀유지 규정 위반 및 2차 피해 조사 업무 태만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사업주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6항 등에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행위 및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조사한 사람과 보고 받은 사람 등은 **조사 과정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
-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예방지침」 제5조 등에 진흥원은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야 하고, 고충과 관련된 관계자의 신원,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감사실)은 '21. 3. 29.부터 '21. 4. 2.까지, 고충상담원이 아닌 前○○(○○○) 등 2명이 사실관계 파악을 사유로 성희롱 접수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비밀누설 및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받게 되었으나 조사 등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 하락

3. 성희롱 사건 통보 의무 위반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등에 성희롱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또한 '22. 9. 28.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안내' 공문을 접수하여 통보 의무를 인지
 - 그런데 진흥원(감사실)은 '21. 11. 25.과 '22. 1. 11.에 2차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고 '23. 1. 9.에서야 사건 접수일을 '22. 11. 10.로 허위 보고

-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비밀유지 위반 및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진흥원에 대하여 **“기관경고”**
- ☞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성희롱 사건 서면 접수 후 조사를 개시한다고 부당 판단하여 조사가 지연되도록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당시 ○○○○○(前○○○○팀장)에게 **“징계요구”**
- ☞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유지 위반자와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전직원 대상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
-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요구”**

9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등 3개부서)은 '22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 28건, 4,268백만원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 「진흥원 회계규정」 제136조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추천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을 선정한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지방계약법」을 미준수한 채 '22. 3. 3. 진흥원 게시판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매뉴얼'을 게시하면서 입찰참가자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임의 선정하여 부적정 업무 처리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가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제도상 개선 요구"

10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지원실 등 4개 부서)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당해연도 운영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

1. 예산 편성 심의 절차 미준수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기관장은 지침에 따라 편성한 예산과 부속서류를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예산을 심의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개최일 15일 전까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개최 7일부터 개최 당일에서야 자료를 송부하는 등 업무를 소홀

* ('20년) 당일 송부, ('21년) 7일 전 송부, ('22년) 3일 전 송부

2.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진흥원 「회계관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년부터 '22년까지 매년 비현금지출 감가상각비(120백만원)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세출예산을 세입예산보다 120백만원 과다 편성

〈세입·세출 예산 부적정 편성 현황('20년~'22년)〉

(단위 : 천원)

연도	세입예산(A)	세출예산(B)	차액(A-B)
2020	45,852,373	45,972,373	△120,000
2021	57,217,281	57,229,281	△120,000
2022	44,230,446	44,350,446	△120,000

3.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등에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행사운영비는 각종 일반수용비·임차료·강사료로 집행하며, 식비·기념품 등은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등 3개 부서)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행사운영비로 식비·다과비 등 46건, 3,055만원을 부적정 집행

4. 국외여비 세출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

- 「진흥원 여비규정」 제23조 등에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 식비, 숙박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국외 항공운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공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규정
- 그런데 진흥원(ICT융합본부)은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 ○○○○ 공무 출장 ('22. 00. 00.~'22. 00. 00.) 국외여비 879만원을 집행하면서 숙박비·항공료 등 672만원을 출장자의 계좌가 아닌 여행대행사(○○투어)에 부적정 지급

☞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과 부속서류를 송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며, 세출예산의 목적과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요구”

11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위 진흥원(경영지원실 등 4개 부서)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공사·용역·물품 총 316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

1.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 산정 부적정

- 「진흥원 회계규정」 제136조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
-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등에 2천만원 이하인 공사·용역·물품인 경우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천만원 이하는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등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2인 견적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대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2천만원 이하는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등 2개 부서)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총 145건, 17억 9,004만원의 계약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
- 그로 인하여 수의계약 체결 시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아 1억 9,552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 공직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등 2개부서)은 '22. 5. 19.부터 '22년 12월까지 '22 ○○○○ & ○○○ 박람회 ○○○ 공동관 운영 용역' 등 총 3건, 9,956만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미징구 한 채 계약을 체결

3. 수의계약 정보 공개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정된 공개내역서 서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사업명, 계약개요(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계약상대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 사유, 사업장소 등

-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업체명, 계약금액 등 일반현황만을 공개할 뿐 계약률,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미공개

☞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으며, 낙찰률, 수의계약 사유 등 세부사항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의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IV. 모범 사례

1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으로 교육격차 해소

소프트웨어(SW) 교육 등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 및 도시 재생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혁신 역량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23. 12.(계속 / '19년부터
※ 3개년 연차사업('19년 3월 ~ '21년 12월) 종료 후, 단년도 평가 기반 계속사업
- 사업비 : 1,970백만원(국비 1,470, 도비 350, 도교육청 150)
※ ('19년) 2,670백만원 ('20년) 1,900백만원 ('21년) 1,900백만원 ('22년) 1,400백만원
- 주관/참여지자체 : 전라남도 / 나주시, 전라남도교육청
- 주요내용
 - (SW체험교육센터 구축운영) 센터교육 및 AI교육전시체험관, 홈페이지 운영
 - (SW교육확산) SW교육 확산행사, 성과 전시 및 온오프라인 홍보
 - (SW강사 양성) 미취업자 대상 SW강사 양성 후 고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 (SW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남형 SW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SW코딩 교육 운영

□ 추진실적

-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청년, 은·퇴직자 대상 **149명** 창·취업 지원
- SW교육 수혜학생 계속 증가, **30,231명** 교육 수료
※ '19년 4,745명 → '20년 4,606명 → '21년 6,303명 → '22년 14,577명
- '섬마을 찾아가는 소프트웨어(SW)교육' 운영으로 **2,170명** 교육 수료
※ '19년 119명 → '20년 525명 → '21년 721명 → '22년 805명
- '장애청소년 희망이음 SW코딩교실' 5개교 운영(총 106회)
※ '20년 1개교, 12회 → '21년 2개교 44회 → '22년 2개교 50회, 145명 수료
-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SW)교육' 운영(35개소)
- 과기부 주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강사 수업과정안 공모 수상(최우수 1, 우수 1)

□ 기대효과

- 소프트웨어(SW)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지역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미래 혁신 역량 제고
-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문강사 위촉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 제공

V. 처분요구서

목 차

①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통보)	19
② 국내여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23
③ 입주기업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개선, 통보, 주의)	27
④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업무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4
⑤ 고정자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38
⑥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업무추진 부적정(훈계, 주의, 통보)	41
⑦ 건설공사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47
⑧ 직장 내 성희롱사건 처리 지연 등 업무처리 부적정(징계, 기관경고, 통보, 주의)	50
⑨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개선)	59
⑩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63
⑪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69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인사위원회 구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인사관리 및 상벌 등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 규정」(이하 “진흥원 인사 규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인사관리 및 상벌,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인사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라남도 소관부서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전략기획팀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 인사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인사 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 관련 중요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직원의 채용·승진·임면·파견·해임·파면·포상·징계·변상처리 등에 관한 사항, 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단법인 ○○○○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하며,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도 기획조정실장, 선임직 이사 중 1인, 외부전문가 1인, 연구본부장 및 직원 중 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재단법인 전라남도○○재단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기획경영팀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진흥원 인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진흥원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 및 원외의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사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규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 소관 본부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을 참고하여 진흥원의 원장을 제외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진흥원의 인사관리 및 상벌 등의 사항이 공정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진흥원은 2019년 7월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표 2] “제6기 및 제7기 인사위원회 구성현황”과 같이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6

명으로 구성하여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제6기 진흥원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임기
7명	7명		
위원장(당연직)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재임기간
위 원(당연직)	○○○	전라남도 ○○○○과장	"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2019.06.01.~2021.05.30.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
위 원(위촉직)	○○○	한국○○○기구 이사	"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제7기 진흥원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임기
7명	7명		
위원장(당연직)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21.06.01.~2022.03.24.) 원장 ○○○ (2022.03.25.~2022.12.31.) 원장 ○○○
위 원(당연직)	○○○	전라남도 ○○○○과장	재임기간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2021.06.01.~2023.05.30.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
위 원(위촉직)	○○○	○○대학교 교수	"
위 원(위촉직)	○○○	○○○변호사	"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20. 7월부터 2022. 12월까지 [표 3] “인사위원회 상정 안건 및 결과 현황”과 같이 3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장이 직원 채용(안) 3건 및 징계 1건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후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면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위원회에서 원장을 제외하여 구성하도록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표 3] 진흥원 인사위원회 상정 안건 및 결과 현황(2020년 7월~2022년 12월)

개최일	구분	상정 안건	심의결과	비고
	3회	4건		
2020.00.00.	제00회	직원 채용(안)	원안가결 (4명 출석, 4명 찬성)	대면심의
		1인 ○○○○○○ ○○○레이터 사업 관련 징계 ¹⁾	○○ (4명 출석, 4명 찬성)	
2021.00.00.	제00회	직원 채용(안)	원안가결 (7명 출석, 7명 찬성)	온라인(zoom)
2022.00.00. ~00.00.	제00회	정규직 신규직원 채용(안)	원안가결 (7명 찬성)	서면심의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2020.00.00. 제00회 인사위원회에서 ‘1인 ○○○○○○ ○○○레이터 사업 관련 징계’의 건을 심의하면서 위원 ○○○이 징계 대상자의 관리자인 ○○○과 ○○○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위원장(원장 ○○○)이 관리자는 무한책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내부 훈계 조치하려고 한다고 답변하였고, 위원 ○○○이 수당 75만원의 추가 지급 부적정 확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위원장(원장 ○○○)이 부정 지급된 사항은 없어 천만다행인 것 같다는 답변을 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전라남도 출연기관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원장을 제외하여 구성하도록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인사관리 및 징계 사항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 진흥원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직원(일자리사업단 ○○○) 징계 의결 요구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 1.성실의무위반 다.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 감봉~견책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국내여비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로 출장할 때에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비 규정」(이하 “진흥원 여비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하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여비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직무수행상 진흥원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

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IV. 근무지의 국내출장시의 여비 편에 따르면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 3월 공무원 여비업무 Q&A 자료집(안전행정부, 현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운임은 실비 지급이 원칙이므로 승차권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사유를 출장자가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소속 임직원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할 경우의 운임은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속 직원 91명에게 257,096,250원¹⁾의 국내여비를 지급하면서 [별표 1] “운임영수증 없이 부적정 집행된 국내여비 개인별 명세”, [별표 2] “운임영수증 없이 부적정 집행 국내여비 운임 명세”와 같이 ○○○○○팀 ○○○ 등 73명의 소속 직원이 출장 후 식당영수증 현지 체류영수증을 첨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한 사실을 확

1) 2023. 2. 3. 기준 총원 91명이며, 총 257,096,250원을 지급함(2021년 102,082,730원, 2022년 155,013,520원)

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적게는 5,790원, 많게는 1,018,9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8,211,49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소속 임직원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교육시키고, 국내여비를 지급할 시에는 자가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명백히 확인한 후에 운임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개선·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입주기업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ICT융합본부, 일자리추진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비창업자와 벤처·중소기업의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시설 내 입주기업을 선정하고 관리·운영하고 있다.

2.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정비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14조에 제1항에 따르면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입주기업(자)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는 최초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재단법인 전남○○○○○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운영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입주평가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최대 3년 이내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최대 8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창업보육시설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안 입

주하도록 하여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퇴거하도록 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등에게 신규로 입주하도록 하여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일자리추진실)은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지원센터의 최대 입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표 1] “○○○○·○○○○지원센터 입주기업별 입주기간 명세”와 같이 2023. 2. 10. 감사일 현재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38개 입주기업 중 ○○○○○연구소는 2004. 6. 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18년간을 입주하고 있고 (주)○○○○는 2005. 12. 1.부터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17년간을 입주하고 있으며 (주)○○○○○○○○ 등 3개 기업은 16년간을 입주하고 있는 등 17개 기업이 10년 이상을 입주하고 있어 특정 입주기업이 독점의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규칙에 최대 입주기간을 명시되도록 규칙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3. 퇴거 대상 입주기업 조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9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기업(자)의 선정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의 합산점수 높은 점수 순서로 하되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진흥원은 관리비 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면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기업(자)을 퇴거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퇴거사유 발생 시 진흥원장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자)에게 퇴거예정일을 명확하게 적어 퇴거 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입주계약서」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퇴거예정일까지, 졸업의 경우에는 졸업일까지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센터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목적물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계약서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의로 임차인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주기업의 선정에 따른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퇴거 예정일을 명확하게 적어 퇴거 예정일 20일 전까지 입주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에게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센터에서 소유물을 반출하여 목적물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한 후 명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이 목적물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일자리추진실, 콘텐츠진흥본부)은 2021. 6월부터 2022. 12월까지 [표] “퇴거 대상 입주기업 관리 현황”과 같이 퇴거대상 ○○○○○○○(주) 등 2개 기업이 각각 2020. 11. 30.과 2022. 1. 31.에 입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고 있으면서 목적물의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퇴거요청 공문, 명도소송 예정 공문 및 명도소송 예정 내용증명 등만을 송부한 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입주기업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퇴거 대상 입주기업 관리 현황

센터명(담당부서)	입주기업(호실)	입주기간	퇴거사유	진흥원 조치내용
목포문화·벤처지원센터 (일자리추진실)	○○○○○○○○(주) (○○○호)	2020.02.01. ~ 2022.01.31.	연장심사 65점으로 탈락	• 입주연장 불합격 통지(2022.01.25.) • 퇴거요청, 관리비 납부, 명도소송 예정 공문 송부(2022.1월~12월) ※ 관리비 미납(2022.1월~12월, 7,857,511원)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진흥본부)	(주)○○○○○ (다○○호)	2019.12.01. ~ 2020.11.30.	연장심사 미신청	• 퇴거조치 및 퇴거통보 내용증명 송부 (2021.06.29.) • 2022.12.28.까지명도요청내용 증명 송부(2022.12.21.) • 2023.01.31.까지 명도요청 내용 증명송부 (2023.01.03.)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퇴거대상 입주기업이 입주 센터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입주기업 연장신청 및 연장결정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기업(자)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간연장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 현황보고서를 입주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작성하여 진흥원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진흥원장은 입주기간연장 신청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입주기간연장신청서 등을 진흥원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주기간 연장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기업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ICT융합본부, 일자리추진실)은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입주기간연장 신청서 등을 진흥원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2] “입주기업 연장신청 및 결정 명세”와 같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4개 기업에 대하여 입주기업 연장 신청 및 결정하면서 70건은 입주계약 만료일 60일 전까지 신청받지 않고 최소 4일부터 최대 95을 초과하여 신청받았고, 2건은 연장신청없이 연장하는 등 총 총 74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입주기간 연장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2] “입주기업 연장신청 및 결정 명세”와 같이 총 15건에 대하여 최소 32일부터 최대 71일을 초과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규정을 벗어난 채 입주기업의 연장신청 및 결정이 이루어져 진흥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 ① 「기업지원시설 운영규칙」 제14조에 입주기업의 최대 연장기간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입주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한 후 입주를 종료하고 예비창업자 등이 신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제도상 개선)
- ② 퇴거 대상 입주기업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통보)

③ 앞으로 관련 규칙에 따라 입주기업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생 략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일자리추진실)

훈 계 대 상 자 ①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 ○○○
(前 ○○○추진단)
②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 ○○○
(前 ○○○추진단)
③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부 ○○팀장 ○○○
(前 ○○○추진단)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남○○○○○○○○육성사업 113억원을 전남도 및 ○○시 등 20개 시·군¹⁾으로부터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다.

○○○○○○장 ○○○는 2019. 7. 1.부터 2021. 9. 5.까지, 2022. 7. 18.부터 2023. 2. 10.까지 일자리추진단에서 전남○○○○○○○○활동가육성사업을 관리하는 ○장으로 근무하였고, ○○○○○장 ○○○는 2021. 9. 5.부터 2022. 7. 17.까지 일자리추진단에서 전남○○○○○○○○활동가육성사업을 관리하는 ○장으로 근무하였으며, ○○○○○ ○○○팀장 ○○○은 2021. 9. 6.부터 2022. 7. 17.까지 일자리추진단에서 전남○○○○○○○○활동가육성사업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전남도 22개 시·군 중 2개(○○·○○군) 군 제외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관리기준」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 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관리기준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의 「사업운영 협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은 필요한

사항을 보완·정산 후 14일 이내에 전라남도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전남○○○○○○○활동가육성사업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군으로부터 반납고지서를 발급받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일자리추진실)은 2019년 전남○○○○○○○활동가육성사업과 2020년 전남○○○○○○○활동가육성사업이 2021. 12. 31.에 종료되었는데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전라도와 ○○시 등 20개 시·군에 정산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또한 [표] “보조사업 미정산 현황”과 같이 보조사업 집행잔액 517,956,046원 및 이자액 1,559,800원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는 등 보조사업 정산 및 반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보조사업 미정산 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종료일)	사업비	반납예정액 (A+B)	집행잔액(A)		이자액(B)		
			도비	시군비	국비 (행안부)	도비	시군비
	11,335,200,000	517,956,046	258,343,453	258,052,793	352,909	603,446	603,445
2019전남○○○○○○○ ○○○○○○육성사업 (2021.12.31.)	6,460,000,000	294,677,620	146,633,559	146,633,559	295,393	557,555	557,554
2020전남○○○○○○○ ○○○○○○육성사업 (2021.12.31.)	4,875,200,000	223,278,426	111,709,894	111,419,234	57,516	45,891	45,891

자료 : 전라남도정보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 ①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 및 반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장 ○○○, ○○○○○○장 ○○○, ○○팀장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전남도(○○○정책과), ○○시 등 20개 시·군에 2019년 및 2020년 전남○○○○○○○활동가육성사업을 정산 보고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516,396,246원 및 이자액 1,559,800원 등 총 517,956,046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고정자산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토지, 건물, 비품 등의 자산을 「고정자산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고정자산 관리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다음 제1호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유형고정자산에는 토지, 건물, 컴퓨터 시스템, 사업용 기자재, 비품, 차량운반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정자산 관리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관리 책임을 재무계약팀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가 자산의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산의 원형 변경, 불용자산의 처리 및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 취득시마다 각 취급책임자와 협조하여 각 고정자산별로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각 취급책임자는 고정자산 취득 시마다 당해 고정자산을 고정자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취급책임자는 사용자 자산 중 유휴자산 또는 불용자산으로서 장래에 있어서도 해당 부서에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리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진흥원 내에서 그 자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제29조에 의하여 유휴자산 또는 불용자산으로 결정된 자산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 또는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과 매각하는 것이 진흥원에 불리한 물품에 해당하는 자산은 폐기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고정자산 취득 시에는 고정자산별로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고정자산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산의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자산의 원형 변경, 불용자산의 처리 및 기타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표] “前 ○○ 관사 자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9. 4. 9. 침대 등 가구 및 가전 10종, 4,315,900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고도 고정자산대장과 고정자산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 前 ○○ 관사 자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품명	규격	가격	부적정 관리 현황
계		10종		4,315,900	
1	가구	침대	1,600×2,300×950	770,000	·고정자산대장 및 고정자산기록부 미기재 ·원장 승인없이 폐기(2022.03.24.) ·고정자산대장 및 고정자산기록부 미기재 ·원장 승인없이 기증(2022.03.28.) -(사)○○○○○○센터○○○○○
2		식탁(의자포함)	1,700×800×745	705,000	
3		소파	2,760×870×910	770,000	
4		거실장	2,500×400×360	550,000	
5		침대협탁	500×400×447	121,000	
6		블라인드	-	610,000	

연번	구분	품명	규격	가격	부적정 관리 현황
7	가전	전기포트	1ℓ	25,900	
8		청소기	14.4V	185,000	
9		전기밥솥	6인용	129,000	
10		세탁기	14kg	450,000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원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2022. 3. 24. 침대 1종(770,000원)을 폐기 처분하였고, 2022. 3. 26. 식탁 등 9종(3,545,900원)을 기증하는 등 자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431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고정자산이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고정자산은 취득 시 마다 고정자산대장과 고정자산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불용자산 처리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고정자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업무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 콘텐츠진흥본부, ICT 융합본부)

훈 계 대 상 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 ○○○
(前 재무관리팀장)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 등 검사조서 작성 대상인 3천만원 이상의 공사 16건을 추진하였다.

경영지원실 ○○○○팀 ○○○는 2021. 9. 6.부터 2023. 1. 31.까지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 담당 ○장으로 근무하였다.

2.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미징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계관리 규정」 제133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관계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계약금액 3천만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제69조에 다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지방계약법」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ICT융합본부)은 2021. 12. 24. ○○○○센터 2층 화장실 보수공사¹⁾를 완료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금 32,000천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640천원²⁾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계약대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1) (계약금액) 32,000천원, (공사기간) 2021. 12. 9.~2021. 12. 24., (계약상대자) ○○○(대표 ○○○), (사업량) 화장실 입구 출입문 2개소 교체, 남자 소변기 1개 철거 및 2개 교체, 세면대 및 유리거울 2개 교체 등

2) 하자보수보증금은 640천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적용대상 공사임

3.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계관리 규정」 제133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관계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영 제70조에 따라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20. 9. 8. 전라남도(감사관)으로부터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와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지체 없이 따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하도록 통보받았다.

따라서 진흥원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종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2020년 정기종합감사 결과 시정하도록 요구받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업

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실, 콘텐츠진흥본부, ICT융합본부)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별표] “정기 하자검사 미 실시 명세”와 같이 ‘전남○○○○○○○ 편의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등 13개소에 대하여 정기하자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 지원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는 5회만 실시하여 3회를 실시하지 않아 정기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하자검사 대상 16개소 중 전남○○○○○○○ 편의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등 10개소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도록 방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2020년 4월 ○○군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을 새기는 안전 ○○거리 ○○공사를 2021. 5. 10. 완료하고서도 시설물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군과 진흥원 모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로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도 일부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2020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시 시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소홀로 시정요구 처

3) 주관부서 : ○○군 지역개발과

분을 받은 이후에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장 ○○○를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준공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받도록 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위탁받아 시행하여 준공된 시설물은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1. 6. 25.부터 2021. 12. 24.까지 2021년 지역○○○○○○○○○○○○○○○ 확산사업 복합교육공간 편의시설 구축공사¹⁾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계관리 규정」 제133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관계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1) (사업비) 10,397천원 (사업량) 엘리베이터 1기(2.2m×2.2m) 설치

구 분	당 초		변 경		공사비증·감(b-a)
	수량	공사비(a)	수량	공사비(b)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3회	1,504,267	0회	0	△1,504,267
제 비 율		17,418,364		16,662,013	△756,351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3,980,932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기관경고·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감사실)

징 계 대 상 자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장 ○○○
(前 ○○○○팀장)

징 계 의 종 류 징계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장 ○○○은 2020. 11. 16.부터 2022. 7. 17.까지 진흥원 ○○○○ ○이자 ○○○○○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 및 소극행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

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Ⅱ.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편에 따르면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피해자 등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3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제1호 다목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및 라목 소극행정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비고에 따르면 제1호 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제1호 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9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면책·소극행정 사례집(소극행정 No! 적극행정, 국민이 행복합니다) 3. 소극행정 편에 따르면 부작위는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직무태만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업무를 부실·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충신고서가 접수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조사에 착수하여 최대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감사실, 경영기획실¹⁾)은 2022. 3월경(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 없음)에 성희롱 고충신고서 2건²⁾이 진흥원 ○○조합에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2022. 11. 10.에서야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계획(안)³⁾을 수립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2022. 12. 8. 조사를 완료하는 등 성희롱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당시 고충상담원인 ○○○○○장 ○○○은 고충신고서가 서면으로 접수된 후에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판단하여 성희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도록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법령을 위반한 채 성희롱사건 조사가 지연 처리되어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 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비밀유지 규정 위반 및 2차 피해 조사 업무 태만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

1) 2022. 7. 18. 기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업무가 경영기획실에서 감사실로 이관

2) (2건) 2021. 11. 25.과 2022. 1. 11.에 각각 2명으로 작성되어 2022. 3월경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일한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음

3) 진흥원 ○○실-006(2022.00.00.),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계획(안)
-(기안) ○○○ (결재) ○장 ○○○

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7항에 따르면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14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예방지침」 제5조에 따르면 고충상담 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원장, 고충상담원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진흥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뇌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3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제5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진흥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고충상담원이 처리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유지를 위반할 시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진흥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감사실, 경영기획실)은 2021. 3. 26. 제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⁴⁾하기 전인 2021. 3. 29.부터 같은 해 4. 2.까지 비공식 사실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충상담원⁵⁾이 아닌 前 ○○(○○○)이 강제로 피해상황에 대해 추궁하고 유도심문을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도록⁶⁾ 하여 비밀누설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2차 피해를 조사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성희롱 사건 ○○조사위원⁷⁾이 작성한 ‘직장 내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 ○○ ○○○’에 따르면 ○○○○○팀장 ○○○(前 ○○○○○장)은 진흥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고충상담원이 아닌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사유로 성희롱 가해자(○○○)에게 성희롱 사건 접수 사실과 가해사실 여부를 물어 피해자의 정보를 누출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남직원들을 공개된 장소(흡연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문답을 진행해 사실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포하는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도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비밀누설 및 2차 피해를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이 하고 있다.

그리고 2022. 12. 27. 개최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사건 접수 신청서 및 진술서를 통한 일관된 진술, 노동조합 의견 등을 통해 2차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2023. 2. 10.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신청인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받게 되었고 2차 가해자에 대한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

4) 진흥원 ○○○○실-0000(2021. 4. 22.) 성희롱 성폭력 관련 고충 조사의 건

5) (고충상담원) ○○○○팀 ○○○, ○○○○팀 ○○○

6) 피해자는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별지(진술서)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함

7) ○○○○○사무소 ○○○ 공인○○○(2022. 12. 8.)

성이 하락하였다.

4. 성희롱 사건 통보 의무 위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2022. 9. 28. 진흥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안내에 대한 공문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제출 의무와 함께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2022. 10. 14.까지 조속히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진흥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감사실)은 2021. 3. 26. 제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그 후 2022. 3월경에 2차례⁸⁾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2023. 1. 9.에서야 성희롱 사건 발생사실을 통보⁹⁾하면서

8) 2021. 11. 25. 2022. 1. 11.

9) 진흥원 감사실-00(2023. 1. 9.). 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 (기안) ○○○ (결재) ○장 ○○○

사건 접수일을 2022. 11. 10.로 허위 보고하였다.

그로 인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뒤늦게 보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은 2020. 11. 16.부터 2022. 7. 17.까지 진흥원 ○○○○○이자 ○○○○○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Ⅱ.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편에 따르면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피해자 등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의3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별표1의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제1호 다목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및 라목 소극행정에 따른 성실 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건책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비고에 따르면 제1호 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제1호 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고충신고서가 접수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조사에 착수하여 최대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은 2022년 3월경(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 없음)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체 없이 확인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채 고충신고서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판단하여 2022. 7. 17.까지 진흥원 ○○○○○으로 지정받았는데도 지정받은 기간내에 조사를 착수하지 않아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성희롱 사건 서면 접수 후 조사를 개시한다고 부당하게 판단하여 조사가 지연되도록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성희롱 고충상담 업무 미숙지 및 처리 미숙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지 조사를 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사업주는 시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확인을 위한 조사하도록 규정된 의무사항이므로 변명에 불과하다.

한편 2차 피해조사 누락 등에 대해 2023. 3. 7.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023. 3. 8.부터 3. 27.까지 2차 피해 및 사건처리 조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①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하고 비밀유지 위반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한 점과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체없이 조사하며 비밀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노력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기관경고)

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성희롱 사건 서면 접수 후 조사를 개시한다고 부당하게 판단하여 조사가 지연되도록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장 ○○○을 징계하며(징계)

③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사건과 관련한 비밀유지 위반자와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④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

내 용

1. 업무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022년 ○○○○○○○○ 전문가 양성사업 ○○근로자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용역 등 [별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된 용역 명세”와 같이 28건, 4,368백만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계관리규정」 제136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관계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과 제10항에 따르면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위원회 구성·운영 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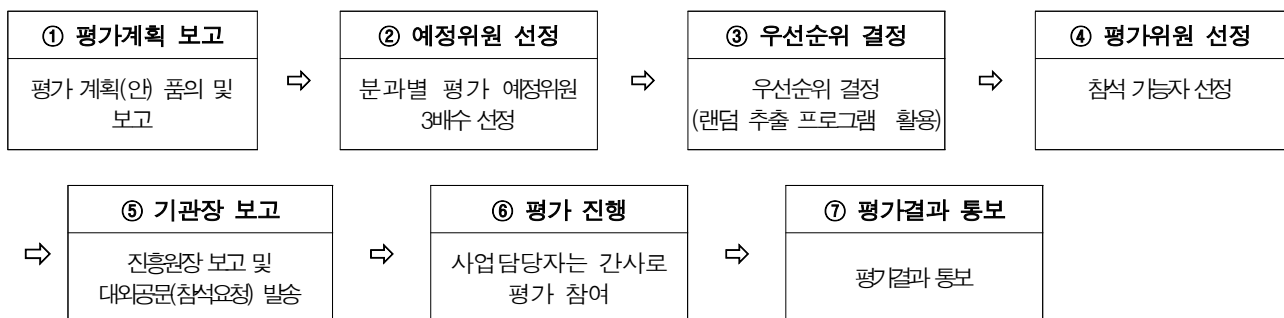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진흥원(경영기획실)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입찰참가자가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2022. 3. 3. 진흥원 내부망 게시판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매뉴얼’을 안내¹⁾하면서 [표]와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 입찰참가자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평가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절차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이 결여된 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매뉴얼과 관련된 결재 문서는 확인할 수 없음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입찰참가자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매뉴얼」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제도상 개선요구)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 콘텐츠진흥본부, ICT 융합본부, 일자리추진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당해연도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행을 위하여 월별·분기별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2. 예산 편성 심의 절차 미준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V. 행정사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예산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수입·지출 계획서 포함)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송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규정집」(이하 “진흥원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1편에 따르면 「지방출자출연법」이 관련 법령으로 기재되어 있

다.

따라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한 예산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예산(안)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송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전라남도지사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1] “예산 편성 심의 절차 미준수 명세”와 같이 총 3차례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개최일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편성한 예산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속서류 등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이사회 개최 7일부터 개최 당일에서야 심의자료를 송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1] 예산 편성 심의 절차 미준수 명세(2020년~2022년)

연도	이사회 개최 알림	예산편성 관련 이사회 개최일	비고
2020	2020. 12. 23.	2020. 12. 23.	당일
2021	2021. 12. 23.	2021. 12. 30.	7일 전
2022	2022. 12. 20.	2022. 12. 23.	3일 전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Ⅱ. 제1장에 따르면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야 하고, 같은 기준 제3장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한 연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진흥원 「회계관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원장은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성립된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만 계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2]와 같이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에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매년 관례적으로 비현금지출 감가상각비(120백만원)를 명시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세입예산보다 120백만원 과다하게 편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표 2]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천원)

연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차액
2020	45,852,373	45,972,373	△120,000
2021	57,217,281	57,229,281	△120,000
2022	44,230,446	44,350,446	△120,000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성립된 세입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세출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재정 건전성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행사운영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 I. 제3항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II. 제2항 나목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출자·출연기관이 직

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집행하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임차료, 강사료 등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의 식비나 행사 관련 기념품 및 기관 선물 구입비를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ICT융합본부, 일자리추진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별표]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명세”와 같이 ○○제품 ○○○○○지원 품평회 다과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식비·다과비 등으로 46건, 30,551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5. 국외여비 세출예산 집행 기준 미준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무로 여행을 한 공무원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하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에 따르면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 식비, 숙박비의 할인정액은 정액지급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국외여비의 집행·정산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국외항공운임을 항공사 등에 직접 송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Ⅲ. 제2항 및 「진흥

원 운영규정」에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적용하여 편성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일비, 식비, 숙박비의 경우 직원이 제출한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국외항공운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항공사에 직접 송금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ICT융합본부)은 2022. 10. 25. [표 3] “○○ ○○○○ 공무 국외 여비 지급 현황”과 같이 해외 네트워킹 공무 출장(2022. 00. 00. ~ 2022. 00. 00.) 국외여비를 8,798천원을 집행하면서 숙박비·항공료 등 6,724천원을 출장자의 계좌가 아닌 여행대행사인 ○○투어에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표 3] 해외 네트워킹 공무 국외 여비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예산	대상	세부내역	금액
합계	2건		8,798
국외여비	○○투어	숙박비, 항공료, 여행자보험	6,724
	○○○, ○○○	식비, 일비	2,074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이사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과 부속서류를 송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세입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며, 세출예산의 목적과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실, 콘텐츠진흥본부, ICT 융합본부, 일자리추진실)

내 용

1. 업무 개요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사·용역·물품 316건을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체결하였다.

2.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산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계관리규정」 제136조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편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공사·용역·물품인 경우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이하로

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이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의 가장 근접한 제출자가 낙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ICT융합본부, 일자리추진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 대해 위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낙찰률 적용없이 체결된 계약 및 예산낭비 명세”와 같이 총 145건, 1,790,044천원의 계약에 대하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계약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낙찰률이 적용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 체결하여 195,522천원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업무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¹⁾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1)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및 진흥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진흥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상대방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등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콘텐츠진흥본부, ICT융합본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 5. 19.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와 같이 총 3건, 99,560천원의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미징수 명세

(단위 : 천원)

연번	담당부서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3건		99,560
1	ICT융합본부	2022년 ○○○ 드론 ○○구축 ○○사업 제공 서비스 용역	2022.05.31.	29,800
2	콘텐츠진흥본부	2022 ○○○○박람회 ○○ 공동관 운영 용역	2022.09.28.	34,900
3	콘텐츠진흥본부	○-○○ 2022 ○○ ○○ ○○ 공동관 운영 용역	2022.11.07.	34,860

자료 :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8.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수의계약 정보 공개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원 운영규정」 제136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관계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계획,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6절에 따르면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 시 규정된 공개내역서 서식²⁾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서식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진흥원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흥원(경영지원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업체명, 계약금액 등 일반현황만을 공개할 뿐 계약률, 수의계약 사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수의계약 체

2) 사업명, 계약개요(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률), 계약상대자(업체명, 대표자, 주소), 수의계약 사유, 사업장소, 기타 등을 기재

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낙찰률·수의계약 사유 등 수의계약 세부사항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